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 통상정책국 및 국가기술표준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광업등록사무소 일부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의 직렬을 변경(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19. ~ 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6항제22호 중 “디자인·브랜드·포장”을 “디자인·브랜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45.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6.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47.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제9조제20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19. 대규모점포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경제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디지털경제통상 협상 총괄 및 조정
3. 디지털경제통상 협상 대응 전략 수립
4. 디지털경제 관련 양자 및 다자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5. 디지털경제통상에 관한 주요국 정책·법안 등 동향 파악 및 대응
6. 디지털경제통상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의 수립
7. 디지털경제통상 분야 자문기구·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의 관리
8. 디지털경제통상 관련 현안 대응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8조제2항제28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제19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국내”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기업 국외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9. 국외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 기업지원 글로벌 현지 대응체계 구축
10. 국외 선진규제 분야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역량 강화 지원

별표 5 제3호 중 공업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6 제3호 중 공업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산업정책실) ① ~ ⑮ (생략)	제9조(산업정책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u>디자인 · 브랜드 · 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u>	22. <u>디자인 · 브랜드</u> ----- -----
23. ~ 43. (생략)	23. ~ 4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4. <u>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 시행</u>
<u><신 설></u>	45. <u>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 · 학 · 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46. <u>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47. <u>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u>
⑰ ~ ⑲ (생략)	⑰ ~ ⑲ (현행과 같음)
⑳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u>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 시행</u>	19. <u>대규모점포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u>	<u><삭 제></u>
<u>23. · 24. (생 략)</u> ②① (생 략)	<u>20. · 21. (현행 제23호 및 제24호와 같음)</u> ②① (현행과 같음)
제12조(통상정책국) ① ~ ⑧ (생 략) ⑨ <u>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제12조(통상정책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신국제무역 · 통상의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u>	<u>1. 디지털경제통상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u>
<u>2. 신국제무역 · 통상의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u>	<u>2. 디지털경제통상 협상 총괄 및 조정</u>
<u>3. 국가 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u>	<u>3. 디지털경제통상 협상 대응 전략 수립</u>
<u>4. 중소 · 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u>	<u>4. 디지털경제 관련 양자 및 다자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u> <u>5. 디지털경제통상에 관한 주요 국 정책 · 법안 등 동향 파악 및 대응</u>

<u>상의 총괄·조정</u> 5. <u>경쟁·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조정</u> 6. <u>환경·에너지·생물다양성· 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u> 7. <u>그 밖의 신국제무역·통상의 제 관련 양자·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조정</u> 8. <u>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에 대한 법·제도의 연구</u> 9. <u>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u> ⑩·⑪ (생략) 제18조(지원총괄과) ① (생략)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7. (생략) <u><신설></u>	6. <u>디지털경제통상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의 분석 및 대응 전 략의 수립</u> 7. <u>디지털경제통상 분야 자문기 구·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 관의 관리</u> 8. <u>디지털경제통상 관련 현안 대응</u> 9. <u>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u> ⑩·⑪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총괄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7. (현행과 같음) 28. <u>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u>
---	--

<u>28. (생 략)</u> 제19조(표준정책국) ①・② (생 략)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u>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u> 8. ~ 32. (생 략) ④ ~ ⑨ (생 략)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 ~ ③ (생 략)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u>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화 학물질대화체 및 규제협력 관 련 대응</u> <u>11. (생 략)</u> ⑤ (생 략)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소관 분야 <u>국내</u> 기술규제 관 련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5. ~ 7. (생 략) <u><신 설></u>	<u>29. (현행 제28호와 같음)</u> 제19조(표준정책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 32.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u>10. (현행 제11호와 같음)</u>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국내외</u> ----- ----- 5. ~ 7. (현행과 같음) <u>8. 수출기업 국외 인증 취득 지</u>
---	---

<u><신 설></u>	<u>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u>
<u><신 설></u>	<u>9. 국외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u> <u>기업지원 글로벌 현지 대응체</u> <u>계 구축</u>
<u><신 설></u>	<u>10. 국외 선진규제 분야 수출기</u> <u>업의 실무 대응역량 강화 지</u> <u>원</u>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보	1		
<u>행정서기 · 공업서기</u>			
또는 전산서기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6]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보	1		
<u>행정서기 · 공업서기</u>			
<u>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